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미제공에 대한 제재 강화>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78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미제공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4조 제1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8.

다. 회 부 일 : 2024.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9조제6항 및 제39조제4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미제공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4조 제1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안 제29조 제6항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음에도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1항 신설).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음에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안 제39조 제4호의2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신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illegible]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1. ~ 3. (생략)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7항-----

현행	개정안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⑧ (생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 ④ (생략)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u>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없음으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 ----- ----- ----- ----- ----- ----- ----- ----- <u>있다.</u>
<신설>	
⑥ ~ ⑨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생략)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생략)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	⑪ ----- ----- -----제8항----- ----- -----.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29조제12항----- ----- ----- -----. -----제29조제12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비용의 감면) ----- -----제29조제8항----- ----- -----

현행	개정안
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정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 -----.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제29조제8항-----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9항----- ----- ----- 6. 제29조제12항----- ----- -----

현행	개정안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략) 5. <u>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발송을 거부한 자</u>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 (생략) 12. <u>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u> 13. ~ 15. (생략) ③ ~ ⑧ (생략)	----- ----- 제41조(벌칙) -----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u>제29조제8항</u>----- -----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제29조제7항</u>----- ----- 13. ~ 1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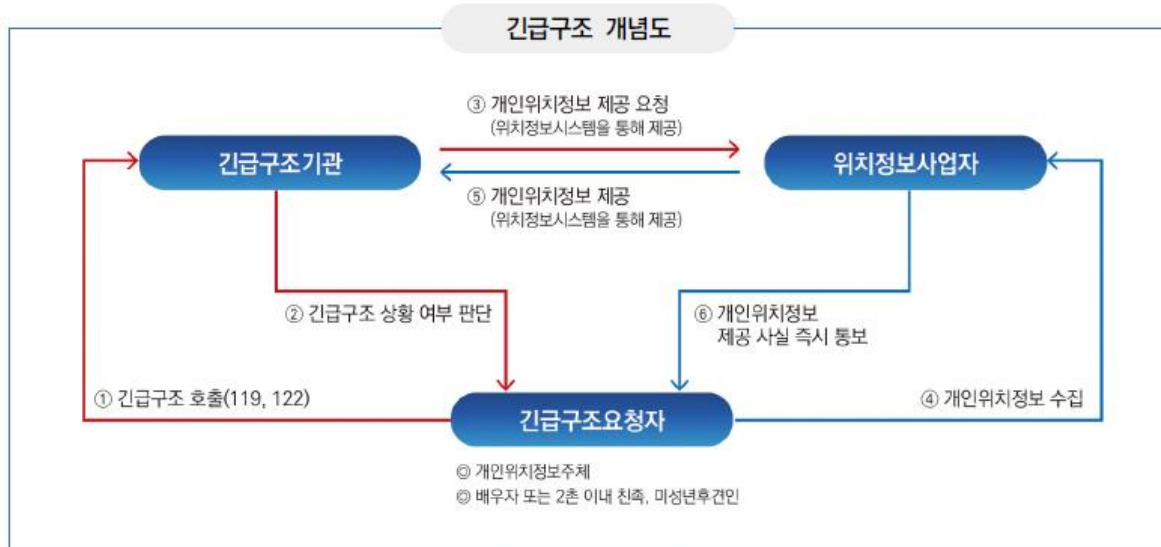
-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5조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¹⁾²⁾.
- 다만 그 예외로서 동법 제29조는 긴급구조기관³⁾이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그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경찰관서(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가 구조를 요청한 자 또는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항), 해당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⁴⁾.

- 1)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함.

위치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6.

- 이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를 예외를 둔 것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등”)가 구조할 사람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요청 시 곧바로 본인의 개인위치

- 4)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적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 수집에 동의하여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 개정안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긴급구조기관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는 그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구축한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청 및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⁵⁾,
실질적으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동통신사로 한정됨.
- 긴급구조기관등 및 이동통신 3사(社)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긴급구조기관등에서 요청한 개인위치정보가 대부분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같은 기간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이동통신사가 고발·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 또한, 개인위치정보 미제공 건수에는 위치정보주체의 단말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등 측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형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 모든 미이행 건수를 이동통신사가 고의로 이행을 회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2~2024.10. 긴급구조기관등의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SKT		KT		LGU+	
		요청	제공	요청	제공	요청	제공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2022	10,910,454	8,193,037	7,325,918	4,727,686	4,998,191	4,185,377
	2023	10,950,274	8,266,991	7,415,021	4,882,954	5,157,463	4,341,554
	2024.10.	9,173,413	6,885,559	7,678,385	4,348,927	5,811,824	3,847,693
해양경찰청 지방해양 경찰청 해양경찰서	2022	11,136	11,671	5,289	5,530	5,845	5,986
	2023	13,678	14,117	5,858	6,210	7,174	7,353
	2024.10.	9,629	10,002	4,714	4,787	6,788	7,033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2022	4,696,605	4,546,686	3,002,829	4,153,510	3,239,321	2,835,319
	2023	5,111,763	4,997,115	3,495,071	3,142,828	3,632,619	3,228,801
	2024.10.	4,274,699	4,137,314	2,942,156	2,711,683	3,106,766	2,804,270

주1: 요청건수는 각 긴급구조기관등, 제공건수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임

주2: 중복 요청 또는 중복 제공, 긴급구조기관등과 이동통신사의 집계방식 차이 등으로 실제 요청 대비 제공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형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측위하는 기술은 기지국 방식, GPS, Wi-Fi의 세 가지로 구분됨.
이 중 기지국 방식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단말기를 측위하는 방식이고, GPS 및 Wi-Fi는 단말기 자체에서 제공하는 위치·Wi-Fi 기능을 이용하여 측위하는 방식임.
- 따라서 기지국 방식 위치정보는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측위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GPS 또는 Wi-Fi 위치정보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직접 측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사업자 또는 운영체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하여 이를 다시 긴급구조기관등에 전달할 수 밖에 없음.
- 그런데 단말기의 유형에 따라 GPS 또는 Wi-Fi를 이용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 유형별 위치정보 제공 실태는 다음과 같음⁶⁾.
 - ① 자급제폰⁷⁾과 ② USIM이동폰⁸⁾의 경우 GPS와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음.

6) 결과 전문은 참고자료 참조

7) 제조사에서 Open Market으로 출시된 단말기로, 특정 이동통신사향(向)이 아닌 단말기

8) 이전에 가입한 특정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를 USIM만 교체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경우

- ③ 외산 단말기의 경우, 애플(iPhone)은 이용자가 긴급통화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만 긴급통화 연결부터 연결 종료 후 5분까지 GPS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Wi-Fi 위치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샤오미(POCO)는 GPS와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한편, 2020년 이전 출시된 구형 단말기는 USIM을 이동한 경우 운영체제 업데이트 제한 등의 문제로 Wi-Fi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⁹⁾.
- 따라서 구조받을 사람이 소지한 단말기가 외산·구형 단말기인 경우, 긴급구조기관등이 GPS 또는 Wi-Fi 위치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회신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종합하면, 이동통신사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요청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의무 위반으로 최근 처벌받은 사례도 없는 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수 중에는 단말기 자체의 문제 등 이동통신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단말기 사업자 또는 운영체제 사업자에 대한 별도 의무(이동통신사의 Wi-Fi 측위앱 탑재 등)를 부과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고려될 수 있어 보이며, 개인위치정보 미제공에 대한 이동통신사 대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9) 연합뉴스, "위급 시 정밀 위치파악 힘든 구형 휴대전화 사용자 79만 명", 2024.10.8.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부과에 적절성 및 부과 대상 관련

-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하는데, 개정안의 과징금은 현행 제14조 제2항¹⁰⁾과 달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 그런데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획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위치정보법상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그 규모나 환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위치정보법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위치정보사업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더욱이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10)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음.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의 중복적인 금전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¹¹⁾,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상 중복적인 제재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 다음으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하고 있는데,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의미함¹³⁾.

-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

11)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12) 이러한 우려에 따라, 하나의 금전 제재를 부과한 경우 다른 제재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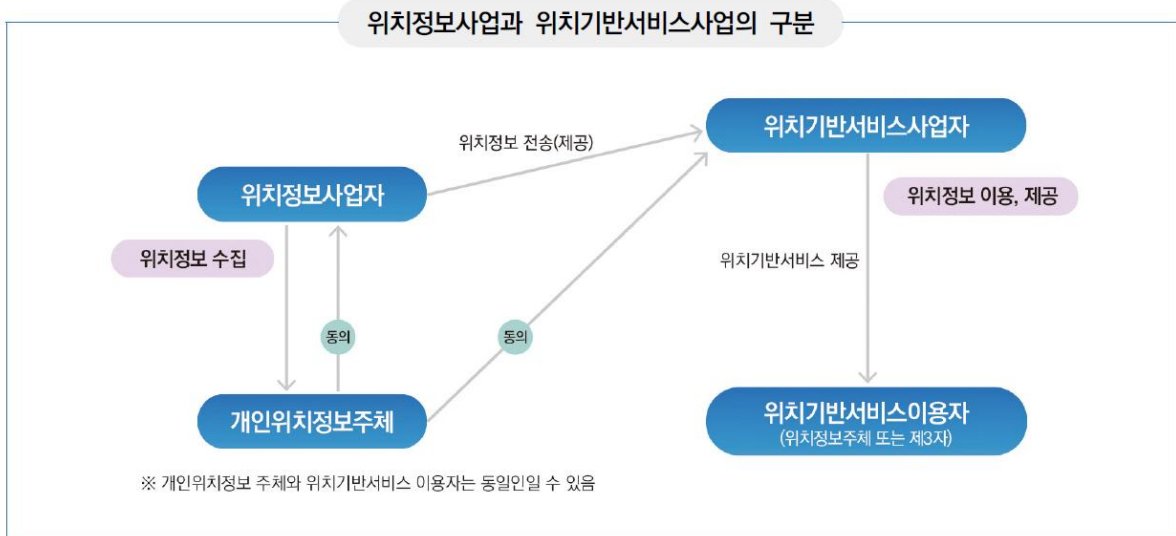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13)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8. (생략)

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¹⁴⁾.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6.

- 그런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을 ‘위치정보사업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벌칙의 형평성 관련

- 개정안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14) 위치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CCTV 정보, 교통카드 사용명세, 카드사용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¹⁵⁾,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¹⁶⁾,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⁷⁾.

15)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16)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7)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처벌을 상향하는 경우 유사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 수준이 과도해짐에 따라 위반행위 간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
 - (위치정보사업자의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
긴급구조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나,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의 경우 그동안 의무자인 이동통신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직접 정밀측위 정보를 획득하는 데 제약이 있었으므로, 단말기 제조사 또는 운영체제 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 측위 앱 탑재 의무 등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해당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임.
 - (과징금)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를 미이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벌칙 등 더 강력한 처벌 수단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긴급구조 관련 수범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닌 ‘위치정보사업자’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벌칙)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개인위치정보 미제공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수용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안 제14조 제1항의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위치정보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SK텔레콤은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위치정보사업자의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

개인위치정보 미제공의 모든 책임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구조기관등이 운영체제 사업자 또는 단말 제조사에도 간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체 없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제공 시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과징금)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은 이동통신사가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하는 공공 지원 사업으로, 매출보다 시스템 구축·개발·운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타 분야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며, 현재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임.
 - (벌칙) 천재지변, 정전, 공사에 의한 통신구간 단선 등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벌칙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현재도 당사는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중으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협조 중인 사업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KT**는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위치정보사업자의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위치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과징금) 위치정보사업자가 안 제29조 제6항 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벌칙) 안 제29조 제6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며,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의견임.

○ **LG유플러스**는 기지국 측위의 경우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측위·회신이 가능하나, GPS 및 Wi-Fi의 경우 단말로부터 측위정보를 전달받아야 회신이 가능하며, 단말 제조사에서 개인정보, 구형 단말기에 대한 기술지원 부재, 단말

사업 철수 등의 이유로 측위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측위 결과 회신이 불가하므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직접 측위 가능한 정보에 한해서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애플코리아(유)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할 필요성과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 사이의 비교형량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은 과도하므로 개정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참고: 20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 추진 배경

-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이통3사 등에 대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실시

□ 측정 개요

- (측정기간) ‘23. 8 ~ 11월
- (측정대상)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측정으로 나누어 실시

구 분		측정 대상 단말
이통3사 품질측정		삼성전자 갤럭시S23 울트라
단말기능 측정	외산폰(2종)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 샤오미 포코 F5 프로
	자급제폰(7종)	삼성전자 갤럭시S23(기본, 플러스, 울트라), A24, A34, Z플립5, Z폴드5
	USIM 이동폰(22종)	(SKT형) 삼성전자 갤럭시 S23(기본, 플러스, 울트라), A24, A34, Z플립5, Z폴드5, 갤럭시4 (KT형) 삼성전자 갤럭시 S23(기본, 플러스, 울트라), A24, A34, Z플립5, Z폴드5 (LGU+형) 삼성전자 갤럭시S23(기본, 플러스, 울트라), A24, A34, Z플립5, Z폴드5

* ‘23년 10월까지 국내 출시된 대부분의 단말기를 측정

- (측정방법) 단말기의 ‘위치·Wi-Fi’ 기능을 “끔(off)”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

- **(이통3사)** 다양한(도시, 지형, 실내외 등) 환경을 반영하여 총 140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위기술별(기지국, GPS, Wi-Fi)로 50회 측정
- **(단말기)** 임의의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위기술별로 10회 측정 (위치정보 제공여부)

○ **(측정내용)**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품질과 단말기 기능 측정

- **(이통3사)** 측위기술(기지국, GPS, Wi-Fi)별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응답시간 측정

-
- ① **위치기준 충족률** : 전체 위치정보 요청 건수 중에서 거리 기준(50m 이내)과 위치응답시간(30초 이내)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위치정보를 수신한 건수의 비율
 - ② **위치정확도** : 시험 지점의 실제 위치좌표와 측위된 위치좌표와의 거리오차 값 전체 중 가장 작은 거리오차로부터 90% 순위에 해당하는 거리오차
 - ③ **위치 응답시간** : 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요청한 시간과 위치정보를 수신한 시간의 차이
-

- **(단말기 기능)** 외산폰 · 자급제폰 · USIM이동폰 등 긴급구조 정밀측위 사각지대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측정

□ 품질측정 결과

① 이통3사 품질측정 결과

◇ 3사 평균 위치기준 충족률 2.7%, 위치응답시간 7.6% 향상
구조요청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치정확도는 측정대상 모두 대폭 개선
- GPS(21.6→11.3m), Wi-Fi(34.2→20.1m), 기지국(107→52.3m)

- **(GPS)** 위치기준 충족률(98.2→97.7%)은 소폭 하락했으며, 위치정확도(21.6→11.3m) 및 응답시간(5.8→4.6초)은 개선
- **(Wi-Fi)** 위치기준 충족률(93.8→96.8%) 및 위치정확도(34.2→20.1m)는 개선되었으며, 응답시간(4.1→4.2초)은 소폭 하락
- **(기지국)** 위치정확도(107→52.3m) 및 응답시간(3.2→3.0초) 모두 개선
※ 기지국은 측위기술 특성상 거리오차 기준(50M 이내)을 만족하기 어려워 위치기준 충족률 측정 제외

< 이동통신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

구분	사업자	①위치기준 충족률(%)		②위치정확도(m)		③위치응답시간(초)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GPS	SKT	97.6	97.6	29.4	10.5	6.7	3.0
	KT	99.0	97.4	12.7	11.6	4.3	3.7
	LGU ⁺	98.0	98.1	20.2	11.3	6.2	7.2
	전체	98.2	97.7	21.6	11.3	5.8	4.6
Wi-Fi	SKT	94.9	99.8	37.0	13.2	2.1	2.4
	KT	95.3	97.5	25.2	20.6	4.9	4.4
	LGU ⁺	91.1	93	35.5	32.3	5.3	5.7
	전체	93.8	96.8	34.2	20.1	4.1	4.2
기지국	SKT	-	-	86.0	54.6	1.6	1.5
	KT	-	-	72.7	34.3	3.4	3.7
	LGU ⁺	-	-	338.4	55.1	4.5	3.9
	전체	-	-	107.0	52.3	3.2	3.0

※ 빨간색 표시는 각 항목별 1위 통신사

② 단말기 기능 측정결과

◇ 자급제폰·USIM이동폰의 경우 기지국·GPS·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
 - 단, 외산폰의 경우 GPS·Wi-Fi 위치정보는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조건에서만 제공

- (외산폰) 기지국 위치정보는 모두 제공하고, GPS·Wi-Fi 위치정보는 특정 조건 외에는 모두 미제공한 것으로 나타남('22년과 동일)
- 애플(아이폰)은 GPS 위치정보를 긴급통화 시 제공하고 Wi-Fi는 미제공, 샤오미(포코 F5)는 GPS, Wi-Fi 모두 미제공('22년과 동일)
- (자급제*·USIM이동폰**) '22년도에는 GPS·Wi-Fi 위치정보를 부분제공했던 USIM이동폰을 포함하여 세가지 유형의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
- * 제조사에서 Open Market으로 출시된 단말로 특정 이동통신사(向)이 아닌 단말
- ** 이전에 가입한 특정 이동통신사 단말기를 USIM만 교체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유형

< 단말기 품질측정 주요 결과 >

구분	기지국		GPS		Wi-Fi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외산폰	제공	제공	미제공	미제공	미제공	미제공
자급제 폰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USIM이동폰	제공	제공	부분제공	제공	부분제공	제공

참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 지표

-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긴급구조기관의 전체 위치정보 요청 건수 중에서 거리오차* 목표(50m)와 위치응답시간 목표(30초)를 동시에 충족하는 위치정보를 수신한 건수의 비율(단위 : %)

$$\text{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 \frac{\text{거리오차 목표 및 위치응답 목표를 충족하는 위치정보수신 건수}}{\text{전체 위치요청 건수}} \times 100$$

* 시험 지점의 참 위치좌표와 계산된 위치좌표와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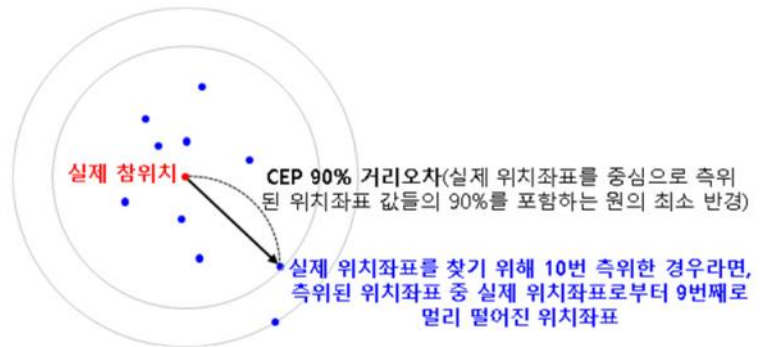
- **(위치응답시간)**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요청한 시간과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응답을 수신한 시간의 차이(단위 : 초)

$$\text{위치응답시간} = \text{위치정보 응답시간} - \text{위치정보 요청시간}$$

- **(위치정확도)** 시험 지점의 실제 위치좌표와 측위된 위치좌표와의 거리오차 값 전체 중, 가장 작은 거리오차로부터 90/100인* 순위에 해당하는 거리오차(단위 : m)

* CEP(Circular Error Probable)
90%(실제 위치좌표를 측위한
위치좌표들의 오차 범위 90%를
포함하는 최소거리)을 적용한
거리오차로,

- 실제 위치좌표를 중심으로 CEP
90%의 값을 반경으로 하는 원안에
측위된 위치좌표들의 90%가
포함된다는 의미(측위된 위치
좌표가 그 원안에 포함될 것에
대한 신뢰도가 90%)



문 의 처

02)6788-5230